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 Tel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1 - 552호

시행일자 2021. 12. 2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건설안전담당자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번호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관리 철저 요청

1. 국가 건설공사와 시설물 안전을 위해 진력하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타워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은 한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금년 9월 17일부터는 점검기준을 강화하였고, 다른 정기안전점검과 달리 동조 6항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자가 설치, 인상, 해체 과정에 입회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요지입니다.
3. 또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조치를 하게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09.17.시행 이하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할경우 벌점 3점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많은 발주자와 사업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검토함에 있어 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4호, 2021.6.29.시행)’ [별표1]에 따라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점검횟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

아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점검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며,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와 시공자, 점검기관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래 내용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1)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타워크레인의 설치 대수, 인상 횟수를 정확히 반영
잘못 적용 된 사례)
점검대상 타워크레인이 여러 대인데도 설치, 인상, 해체 3회만 반영
→ (시정) 타워크레인 대수×(설치시+인상시×인상횟수+해체시)로 반영
예) 25층 아파트 공사에 타워크레인을 5기 설치한 경우
 $5기 \times (1+1 \times 5회+1) = 35회$ 점검
- (2) 발주자는 정기안전점검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시 ‘지침’ 제51조 3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타워크레인의 설치 대수와 점검 횟수를 명시하여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3)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점검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자가 타워크레인마다 설치, 인상, 해체 시마다 하루종일 입회하여 점검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8항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 대가 반영 여부 확인.

첨 부 : (1)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사본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수신처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